

제 685 호

1978.11. 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편집 : 문화광보관 김인동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 6090

시 보

차 례

○ 조 례	
제 1289 호	서울특별시 청소년대책위원회조례..... 3
제 1290 호	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... 5
○ 규 칙	
제 579 호 :	도시계획사업 (광장) 실시계획인가 5
제 581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 6
제 582 호 :	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7
제 58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도로) 실시계획인가 8
제 58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도로) 실시계획인가 9
제 585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 10
제 586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11
○ 공 고	
제 441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1
제 442 호 :	도시계획사업 (하천) 실시계획공람공고..... 12
제 443 호 :	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..... 12
제 446 호 :	환지처분 (경인,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일부) 공고 1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022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책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11
1978년 11월 8일

서울특별시 조례 제 1289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책위원회 조례

제 1 조 (목적)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·출장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구·출장소에는 구·출장소 청소년 대책위원회(이하 "구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기능) ①위원회 및 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시장 또는 구·출장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의 지도·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.
2. 청소년 행정에 관한 관계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.
3.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시설의

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.

4. 청소년의 인격도야 및 심신단련과 민간청소년 단체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.

5. 기타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.

②위원회(구위원회포함)는 청소년 대책위원회의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청소년 대책위원회에 청소년대책 업무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.

제 3 조 (위원회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고,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 한다

③당연직 위원은 시공무원(3급이상)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비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.

⑤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구위원회) ①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청장(출장소장)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교육구청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구·출장소 공무원 월중(3월이상)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비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.

⑤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의 직무등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(구위원회)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(구위원회)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·부

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7 조 (간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(구위원회)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제 8 조 (수당 및 여비) 비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운영세칙) 위원회(구위원회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(구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1978.11.14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

○서울특별시조례 제 1290 호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
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
다.

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항 수입증지는 교육감이 발행하
되 그 종류는 다음의 6종으로 한
다.

- 1. 10 원
- 2. 50 원
- 3. 100 원
- 4. 300 원
- 5. 500 원
- 6. 1,000 원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○서울특별시고시 제 579 호

도시계획사업(광장)실시계획인가

- 1. 건설부고시 제 214 호(78.8.2)로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
(광장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
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- 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는 이고시로 갈음함.
- 3. 관계도서는 동대문 토목과에 비
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8.11.6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 위치: 서울 동대문구
연복3동 170 - 171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연복광장 시
설공사

3. 사업규모: 폭=가, 아스팔트 포장

$$78 \Delta = 50.6 \text{㉠}$$

$$467 \Delta = 45.7 \text{㉡}$$

연장=나. 하수관 매설

$$D = 450\% - 600\%$$

$$I = 335 \text{㉢}$$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: 1978.

인가일 ~ 1978.12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
지: 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
위한 관계인 성명: 별첨 토지
주서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58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
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도
로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
및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
제 12 조 및 제 13 조 동법시행령
제 7 조의 2 와 건설부 고시제 41
호(77.3.16)의 권한위임 사항
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
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
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
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
인다.

1978.11.8.

서울특별시

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토	2	57	30-70m	2,600m	용산역(24호광장)	서빙고(광로 36)	서빙고역 부근 780m 구간변경
변경	"	"	"	"	"	"	"	"
기정	"	1	40	35	3,820	적선동(광장3)	세브란스병원(광40)	사적터널구간로폭 확장
변경	"	"	"	35-50	"	"	"	"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582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- 도시계획사업(하수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건설부 고시제 4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-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재산에 관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봉지 할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고시로 갈음함.
-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

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10. .

서울특별시장

- 사업의 시행지: 성북구 정릉동 895번지 앞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정릉동 895번지앞 하수도 공사
- 사업의 규모: 알거(2x2x이런) L=86m 및 부대시설
-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-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인가일서부터 78년 11월
-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건물: 토지조서 생략
- 토지, 건물의 이해 관계인 주소, 성명: 건물조서 생략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3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 고시 제 276 호 (77.8.9)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본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(하천복개) 로 인하여 그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다음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 8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청과 협의를 필하였으므로 공사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.
3. 본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사유의 토지 및 건물은 없으므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로 갈음한다.
4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8.11.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자의 위치

기점 : 동대문구장안동 246 번지

종점 : 동대문구답십리동 21 의 2 번지

나. 사업종류 및 명칭
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

명칭 : 장안동 지내 전농천 지류 복개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암거 4 x 3 x 2 L : 390 m

암거 3.5 x 2.5 x 2 L : 370 m

양거 3.5 x 2 x 2 L : 15 m

라. 사업시행자

서울특별시장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

78.11. ~ 78.11.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 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: 없음.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
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없음.

아. 도시계획법 제 83 조제 1 항의 규

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없음.

시설내용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 (관리청)	관리청별의 근 거	비 고
하 천	동대문장안동 246	천	5,800평	국(건설부)	건설부도시 415-9187 (77.5.3)	
"	"	"	4,178평	"	건설부도시 415-22174 (78.9.15)	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584 호</p> <p>도시 계획 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실시 계획인가</p> <p>1. 서울시 고시 제 248 호 (78.5.29) 로 고시된 도시 계획 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</p> <p>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 명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한다.</p> <p>3. 관계도서는 신청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8.11.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	<p>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기점 : 동대문구답심리동 12-203 번지 종점 : " " 12-7 번지</p> <p>나. 사업종류 및 명칭 종류 : 도시 계획 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명칭 : 장안동 지내 전농천 지류 복개공사 (3 차)</p> <p>다. 사업규모 암거 (2.5 x 2 x 2 편) L : 436 m (당초 480 m로 금회 시공후 잔여 사업량은 장수토 구간 도로 확장시 시행 계획) 도로포장 A : 4 m 도로경계석 L : 400 m</p> <p>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8.11. . ~ 78.11.30</p> <p>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재산구분	지 번	지 목	지 적	비 고
토 지	동대문구 답십리동 12-33	대 지	20 평	건물없음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
에 의한 관제인 주소, 성명 :
주소 : 성동구 행당동 128 의 22
성명 : 황 칠 성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585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
지 적 승 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1 호 (78 .

7.4) 및 제 545 호 (78.10.20) 로
일부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학
교) 및 폐지결정된 도로에 대하
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
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
위임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
를 고시한다.
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1 과와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
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인다.

1978.11. .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일부변경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 정	배화여자중·고등학교	종로구 필운동 12- 76 필지	32,000 (9,680명)	
변 경	"	종로구 누상동 산 33 일대	45,530 (13,773명)	추가 13,530 (4,093명)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폐지 지적승인조서

구 분	등 급	류 별	번호	목 원	연 장	기 점	총 점	비 고
폐 지	소 로	2		8	50	종로구 명창동 95	종로구 명창동 95-2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86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 (78.7.12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,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봉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1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퇴기동 66-107 번지

앞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입로확장공사

다. 사업의 규모:

1) 콘크리트포장: 2 a

2) 석축: $H=2.5m$

$L=5m$

라. 사업시행자:

서울특별시장(봉대문구청장)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:

인가일~78.11.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

물: 별첨조서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
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79 호 (72.3.6) 로 시설 결정고시된 장석로의 1 개소 도로포장공사 구간중 장석로 공사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1978.10. .

서울특별시장

공 람 계 요

1. 사업장 위치: 석관동 361-4 ~ ~상월곡동 3 의 2 (장석로)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장석로의 1 개소 도로포장공사
3. 사업의 규모: $B=20m$
 $L=200m$
4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:
인가일~78.11.25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생략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2 호

도시계획사업(하천)
실시계획공람공고

- 1.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 (66.6.21) 및 건설부 고시 제 2948 호 (66.12.17)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(하천) 중랑천(송정동) 재방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3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8.11.9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1. 사업장의 위치 :
기점 : 성동구송정동 204-168
종점 : " " 73-1040
- 2. 사업의 종류와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하천)
명칭 : 중랑천(송정동) 재방축조공사
- 3. 사업의 규모
제방축조 B = 24~42 m H = 8 m
L = 446 m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상
- 5. 사업착수 및 준공
1978.11. ~ 1978.12.31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43 호

환지계획 변경인가 및
환지예정지 지정공고

- 1. 서울특별시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390 호 (78.9.25)로 공람공고한 바, 동 토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 당초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

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, 제 56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환지역지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
- 2. 환지역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,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8.11. .

서울특별시 장

환지역지 변경지역 내역

- 가. 사업명 :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위치 : 강서구내 반산동 462-5번지의 1필지
- 변경면적 : 102.3평
- 다. 변경도서 : 생략 (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446 호

환지처분 (경인,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) 공고

- 1. 당 시가 시행한 경인, 김포토지

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청산금이 결정되어 별첨 도서내용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- 2. 환지 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에 공람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78.11.10

서울특별시 장

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경인,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위 치
 - 1) 경인지구 : 강서구 화곡동, 독동, 신월동, 신정동 각 일부토지
 - 2) 김포지구 : 강서구 화곡동, 목동, 동촌동 각 일부토지
- 다. 면적 및 필지수
 - 1) 경인지구 : 335,955.8 평 (4,778 필)
 - 2) 김포지구 : 351,390.4 평 (3,432 필)